

'25 성숙기 지원사업 사업설명회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



**본 자료는 『'25년 (예비)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 사업』
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원활한 참여 지원을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.
일부 내용은 최종 공고시 변경 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**



목차

01 성장지원팀 소개 

03 사업개요 

02 사업 목적 및 배경 

04 추진 일정 





성장지원팀 주요사업

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

- 소셜클래스 운영
- 청소년 사회적경제 봉사학습

도약기

-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IR대회 운영

성숙기

- **성숙기 지원사업**
- 크라우드펀딩
- 사회적금융 정보 확산 및 교육 등

민간협력(CSR)

- 민간·공공기관 협업사업 운영



성숙기 지원사업

추진배경

추진배경

-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**건전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집중 지원함**으로써 기업 자생력 제고
- 사회문제의 다양화·거대화에 따라, **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중심의 협업에 기반한 사회적 성과 창출 필요**

Keyword

추진목적

- 소셜미션 해결을 지향하는 **사회적기업 간 협업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** 사회문제 해결력 제고
- **건전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**의 사회문제 해결 기회를 지원하여, **경제적·사회적 성과 제고 등 사업 확대 기반 마련**

(‘25년 추진방향) 지역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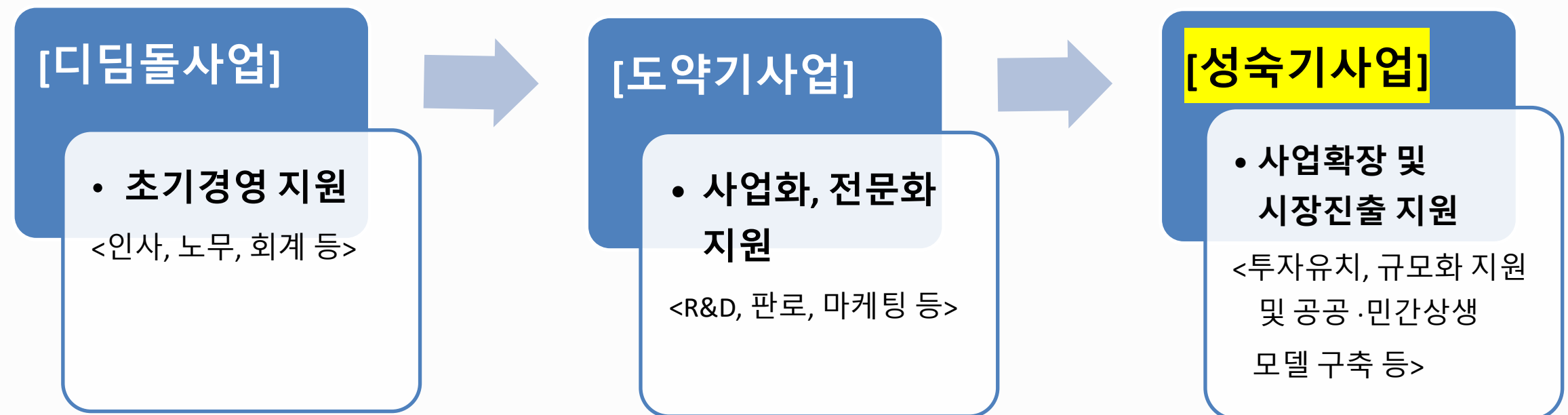
- 지원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수준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



성숙기 지원사업

추진배경

스케일업 지원사업



성숙기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지원대상

지원유형

- 최소 3개소 이상 (예비)사회적기업 등의 컨소시엄
 - * (사회적)협동조합, 연합회 등도 참여 가능하나 (예비)사회적기업 구성율이 50%이상 이어야 함.
 - ** 협업기업 대표사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

지원규모

- 총 6개 컨소시엄, 기업 당 최대 150백만원 지원
 - * 최대 총 사업비는 300백만원(지원 사업비 50% + 기업 자부담 50%)으로, 심사를 통해 기업 당 지원규모 결정

지원유형

- 사회서비스형, 시장확대형
 - (사회서비스형)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확대 지원
 - (시장확대형) 사회적기업의 사업 규모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

성숙기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지원요건

- 협업을 통해 사업을 규모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, 아래의 요건 충족 필요
- (구성원) **3개 이상** (예비)사회적기업이 협업기업으로 참여
 - * (예비)사회적기업이 3개 이상일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가로 참여 가능하나, 총 회원사의 50% 이내여야 함
 - ** 사회적경제기업: (사회적)협동조합(연합회)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소셜벤처
- (대표사) **사회적기업으로 제한**,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실무자 1인 보유 必
 - * 본 지원사업의 협약은 진흥원과 대표사 간 진행
- (기업 자부담) **총 사업비(사업비+기업 자부담)의 50%**를 협업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
 - * 협업기업별 분담 규모는 자체적으로 결정

* **지원 제외 대상(대표사 기준):**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(기업)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,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(지방)보조금을 받은 자,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: 사회적물의 발생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 등

성숙기 지원사업

사업개요

지원내용

-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개발비 지원


구분	내용(예시)
지원 항목	연구개발 (R&D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매뉴얼 개발·활용 관련 비용 · 외부 연구기관 등을 통해 위탁하는 기술개발 비용 · 시험/분석/검사/인증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비용 · 제품 및 서비스 IP 권리화 비용(특허, 상표출원 등)
	생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협업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· 공동 CI, BI 및 브랜딩을 위한 개발 비용(앱개발 비용) · 생산 공정 내 필요한 신규 기기 도입 및 기술개발 향상 비용 ·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비용 · 신제품 시장테스트를 위한 전문가 및 패널 구축 비용 등 · 경영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인증(ISO, HACCP 등) · 기존 상품 디자인 개선 및 신규 상품 디자인 개발 비용 · 시제품 생산 관련 비용
	판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판로 마련(온-오프라인) ·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비용(1회성 행사 지양) · 제품 및 서비스 홍보, 현장 판매를 위한 전시회 등 참가 비용
	해외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박람회 참가 비용 등 · 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, 수출전략수립 컨설팅 등 · 수출을 위해 필요한 외국어 통·번역 서비스 활용 비용

성숙기 지원사업

 **사업개요**

지원내용

-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지원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개발비 지원

구분	내용(예시)
<p>불가항목 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기업의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비용 · 사업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· 사업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· 사업과 무관한 인사, 노무 등 컨설팅 비용 ·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, 보험료, 기부금, 대출이자, 각종세금(부가세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계좌이체 수수료는 인정 ·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등

*주의사항 ① ‘연구개발(R&D)’ 및 ‘생산’ ‘해외진출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필요
 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성 물품구매비 편성은 가능하나, 기업 자부담 범위 내 집행 가능
 ③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%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
 ④ 지원항목 중 ‘판로’ 부분은 총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
 ⑤ 기업 자부담으로 인정된 보수(인건비) 외에는 지출 내역으로 보수 편성 불가

성숙기 지원사업



사업개요

기업자부담기준

- (구성) 기업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0%로, 현금 부담 원칙
 - 단,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투입된 직원 등의 ①보수(총 사업비 20% 이하), ②타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사업비 및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은 자부담으로 인정
- ①-1 보수는 참여기업이 고용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
(산식)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(1년 미만인자는 월 평균급여액 기준)/12 × 참여기간(개월) × 참여율(100% 초과 불가)
- ①-2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(구입가의 20%) 인정 가능,
다만, 보수와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의 20% 이하여야 함
- ②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비에 한하며, 본 사업에서 활용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

성숙기 지원사업
 **사업개요**

총사업비구성

지원사업비 50%

기업 자부담 50%
(현금 부담 원칙)

보수
(시설 및 장비비) **20% 이내**

타 기관 사업비
및 재료비 등

성숙기 지원사업 사업개요

- (협약기간) 협약체결일 ~ 2025.11.14.(금)
- (우대사항) 22~24년 SVI 측정결과 '탁월', '우수' 등급기업
- (접수기간) '25.3.11.(화) ~ '25.3.25.(화) 17시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network@ikosea.or.kr)

* (문의처) 성장지원팀 031-697-7761~4

• (제출서류)

	제출서류	필수여부	비고
1	참가신청서	필수	서식
2	협업기업 현황	필수	서식
3	사업계획서(예산운용계획 포함)	필수	서식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대표자 및 참여인력)	필수	서식
5	법인등기사항증명서	필수	별도제출
6	사업자등록증	필수	별도제출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필수	별도제출
8	4대보험 완납증명서	필수	별도제출
9	최근 2년간 재무제표(23년, 24년 가결산) 각 1부	필수	별도제출
10	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지정서, 소셜벤처판별통지서(협업기업 개별기업)	해당시	별도제출
11	대면심사 자료 PPT 및 PDF 자료 각 1부	필수	별도제출

▶ 제출서류 5~9번 컨소시엄 대표사 기준, 10번 협업기업 개별기업 기준 제출

성숙기 지원사업
 **추진일정**

3월

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

4월

우선협상 및 협약체결

4~11월

사업운영

11월

사업비 정산 및 마무리



질의응답